

1. 제정이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며,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보좌기관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사무분장 등의 사항에 관하여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대범죄수사청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2조부터 제9조까지)

- 1) 검찰관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검찰담당관, 감사담당관, 인권·양성평등담당관 등 3개의 보좌기관을 두고 각각의 분장사무를 정함.
- 2) 대변인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공보담당관을 두고 분장사무를 정함.
- 3) 기획조정관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비상안전담당관 등 4개의 보좌기관을 두고 각각의 분장사무를 정함.
- 4) 인사정책기획관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인사담당관, 수사정책담당관 등 2개의 보좌기관을 두고 각각의 분장사무를 정함.

- 5) 수사정보관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수사정보1담당관, 수사정보2담당관 등 2개의 보좌기관을 두고 각각의 분장사무를 정함.
- 6) 경제범죄수사국에 경제범죄수사과, 금융범죄수사과, 반독점수사과, 범죄수익수사과 등 4개의 보조기관을 두고 각각의 분장사무를 정함.
- 7) 반부패수사국에 반부패수사과, 마약수사과, 공공사회안전수사과, 자금추적·회계분석과 등 4개의 보조기관을 두고 각각의 분장사무를 정함.
- 8) 과학수사국에 사이버기술수사과, 디지털수사과, AI가상자산분석과 등 3개의 보조기관을 두고 각각의 분장사무를 정함.

나.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10조부터 제21조까지)

- 1) 청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수사심의담당관, 인권보호담당관, 기획공보담당관, 수사정보담당관 등 4개의 보좌기관을 두고 각각의 분장사무를 정함.
- 2) 사무국에 총무과, 사건과, 증거기록과, 수사지원과, 과학수사지원과 등 5개의 보조기관을 두고 각각의 분장사무를 정함.
- 3) 경제범죄수사국에 중대경제범죄수사1과, 중대경제범죄수사2과, 조세범죄수사과, 국제경제범죄수사과, 범죄수익수사과 등 5개의 보조기관을 두고 각각의 분장사무를 정함.
- 4) 금융범죄수사국에 금융범죄수사1과, 금융범죄수사2과, 금융범죄합동수사과, 가상자산합동수사과 등 4개의 보조기관을 두고 각각의 분

장사무를 정함.

- 5) 반독점수사국에 반독점수사1과, 반독점수사2과, 반독점수사3과, 반독점수사4과 등 4개의 보조기관을 두고 각각의 분장사무를 정함.
- 6) 반부패수사국에 반부패수사1과, 반부패수사2과, 반부패수사3과, 공공안전수사과, 사회약자범죄특별수사과 등 5개의 보조기관을 두고 각각의 분장사무를 정함.
- 7) 마약수사국에 마약수사1과, 마약수사2과, 마약수사3과, 마약수사4과 등 4개의 보조기관을 두고 각각의 분장사무를 정함.
- 8) 첨단수사국에 방위사업·산업기술수사과, 사이버정보수사과, 보이스피싱합동수사과 등 3개의 보조기관을 두고 각각의 분장사무를 정함.

다. 그 밖의 지방중대범죄수사청의 소속기관(안 제22조부터 제37조까지)

- 1) 청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수사심의담당관, 인권보호담당관, 기획공보담당관, 수사정보담당관 등 4개의 보좌기관을 두고 각각의 분장사무를 정함.
- 2) 경제범죄수사국에 중대경제범죄수사과, 금융범죄수사과 및 범죄수익수사과를 두되, 수원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 반독점수사과, 대전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과, 부산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 국제경제범죄수사과 등 보조기관을 추가로 두고 각각의 분장사무를 정함.
- 3) 반부패수사국에 반부패수사1과, 반부패수사2과 및 마약수사과를 두

되, 수원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 마약수사과 대신 마약합동수사과를 두며, 수원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 방위사업·산업기술수사과, 대전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 산업기술수사과, 부산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 마약수사2과 등 보조기관을 추가로 두고 각각의 분장사무를 정함.

4) 사무국에 총무과, 사건과, 수사지원과, 과학수사지원과 등 4개의 보조기관을 두고 각각의 분장사무를 정함.

라. 중대범죄수사청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안 제38조 및 제39조, 별표 1 및 별표 2)

1) 중대범죄수사청에 396명(중대범죄수사청장 1명, 1급 수사관 1명, 2급 수사관 8명, 3급 수사관 8명, 4급 수사관 이하 315명,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60명, 전문경력관 3명)의 정원을 둠.

2) 중대범죄수사청 소속기관에 2,478명(1급 수사관 6명, 2급 수사관 8명, 3급 수사관 22명, 4급 수사관 이하 2,198명,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205명, 경정 이하 39명)의 정원을 둠.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예비비 반영

다. 합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입법예고 예정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
· 보좌기관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
항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중대범죄수사청

제2조(감찰관) ① 감찰관 밑에 감찰담당관·감사담당관 및 인권·양성
평등담당관을 두며, 감찰담당관은 3급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이하
“수사관”이라 한다)으로, 감사담당관 및 인권·양성평등담당관은 4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② 감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찰관을 보좌한다.

1. 소속 공무원의 비위에 관한 조사
2. 소속 공무원의 비위에 관한 정보수집·관리 및 진정 그 밖에 내사

사건의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3. 감찰에 관한 법령·제도·정책 등에 대한 검토·연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퇴직공직자의 취업 제한에 관한 사항

5. 소속 공무원의 병역사항의 신고 및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이 감찰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찰관을 보좌한다.

1. 사무감사·기강감사 및 사건평정에 관한 사항

2. 감사제도의 운영 및 감사계획의 수립·조정

3. 그 밖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④ 인권·양성평등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찰관을 보좌한다.

1. 인권업무에 관한 기획·법령·제도·정책 등에 대한 검토·연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인권침해 예방·감독 및 인권침해 사건 처리에 관한 사항

3.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

4. 중대범죄수사청 소관 분야 양성평등 관련 정책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사항

5. 소속 공무원의 양성평등 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에 관한 사항

6. 인권보호 및 양성평등 관련 유관기관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7. 수사심의 관련 제도·정책의 수립 및 운영·관리

8. 손실보상 관련 제도·정책의 수립 및 운영·관리

제3조(대변인) ① 대변인 밑에 공보담당관을 두며, 공보담당관은 4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② 공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1. 중대범죄수사청 업무의 대외 공표에 관한 사항
2. 중대범죄수사청의 홍보기획에 관한 사항
3. 보도자료 관리·분석, 오보·왜곡보도에 대한 대응
4. 언론취재의 지원 및 협조
5. 온라인대변인 지정·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점검 및 평가

제4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국제협력담당관·정보통신담당관 및 비상안전담당관을 두며, 기획재정담당관은 3급 수사관으로, 국제협력담당관 및 정보통신담당관은 4급 수사관으로, 비상안전담당관은 임기제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주요정책과 업무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주요사업의 진행 상황 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3. 대국회 업무의 총괄·조정
4. 성과관리 기본계획·전략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5. 정부업무평가 총괄·조정
6. 국정과제 관련 과제 발굴·선정, 추진상황 확인·점검

7. 중대범죄수사청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의 총괄·조정

8. 예산의 편성·결산 및 집행의 조정에 관한 사항

9. 민원, 국민신문고 및 정보공개업무에 관한 사항

10. 행정심판업무 및 소송사무에 관한 사항

③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국제협력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2. 국제수사공조 등 국제협력 업무에 관한 사항

3. 수사에 관한 외국기관·국제기구 등과의 국제협력 및 국제회의 개최·참가에 관한 사항

4. 국제형사사법 관련 정보·자료의 조사·수집·연구 및 간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수사 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④ 정보통신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전산화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전산업무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통신 및 보안에 관한 사항

4. 전산장비·자료 및 통신기기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5.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통신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7. 청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전산·통신업무에 관한 사항

⑤ 비상안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 및 훈련 총괄
2. 정부비상훈련,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3. 안전관리·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련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
· 운영

제5조(인사정책기획관) ① 인사정책기획관 밑에 인사담당관 및 수사정책담당관을 두며, 각 담당관은 3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② 인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인사정책기획관을 보좌한다.

1.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인사 운영에 관한 사항
2.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의 채용·승진·전보 등 임용에 관한 사항
3.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의 상훈, 징계 및 근무평정 및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한 사항
4.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5.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운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③ 수사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인사정책기획관을 보좌한다.

1. 수사정책의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수사업무 관련 법령·제도·정책 등 연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수사·조사 지원에 관한 사항
4. 수사업무 관련 유관기관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5. 수사연구관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형사정책 관련 제도·정책의 연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수사정보관) ① 수사정보관 밑에 수사정보1담당관 및 수사정보2담당관을 두며, 수사정보1담당관은 3급 수사관으로, 수사정보2담당관은 4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② 수사정보1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수사정보관을 보좌한다.

1.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의 직무에 속하는 범죄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의 분석·검증·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지방중대범죄수사청이 수집한 중대범죄등 관련 정보와 자료의 분석·검증·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다른 기관에서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첩된 중대범죄등 관련 정보와 자료의 분석·검증·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중대범죄등과 관련된 중요 정보와 자료의 분석·검증·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중대범죄등 정보와 관련된 중대범죄수사청 사무의 기획·조정·지원·지휘·감독 및 교육에 관한 사항

③ 수사정보2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수사정보관을 보좌한다.

1. 법 제4조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의 직무에 속하는 범죄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중대범죄등과 관련된 중요 정보와 자료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7조(경제범죄수사국) ① 경제범죄수사국에 경제범죄수사과·금융범죄수사과·반독점수사과 및 범죄수익수사과를 두며, 경제범죄수사과장은 3급 수사관으로, 금융범죄수사과장·반독점수사과장 및 범죄수익수사과장은 4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② 경제범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다음 각 목의 중대범죄등 사건 및 중대범죄수사청장이 명하는 사건에 관한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사무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가. 「형법」 제2편제39장 및 제40장의 범죄사건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 및 제8조의 2의 범죄사건

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범죄사건

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전자금융거래법」 및 「형법」 제114조에 각각 규정된 범죄사건

마. 법 제2조제2호나목의 범죄사건 중 경제범죄사건, 조세범죄사건 및 보이스피싱범죄사건

-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사건
- 2. 제1호 각 목의 사건에 대한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사무의 보고 및 관련 정보의 보고에 관한 사항
- 3. 제1호 각 목의 사건과 관련된 진정·내사·탄원 등의 접수·처리에 관한 사항
- 4. 제1호 각 목의 사건과 관련된 범죄 현상 및 정보의 수집·분석·관리·연구, 정책·수사지침의 수립에 관한 사항
- 5. 제1호 각 목의 사건과 관련된 수사기법 개발·지원 및 교육, 통계 및 기록물 관리
- 6. 제1호 각 목의 사건과 관련된 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③ 금융범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다음 각 목의 중대범죄등 사건 및 중대범죄수사청장이 명하는 사건에 관한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사무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사건
 - 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사건
 - 다. 법 제2조제2호나목의 범죄사건 중 금융범죄사건 및 가상자산범죄사건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사건
- 2. 제1호 각 목의 사건에 대한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사무의 보고 및 관련 정보의 보고에 관한 사항

3. 제1호 각 목의 사건과 관련된 진정·내사·탄원 등의 접수·처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 각 목의 사건과 관련된 범죄 현상 및 정보의 수집·분석·관리·연구, 정책·수사지침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제1호 각 목의 사건과 관련된 수사기법 개발·지원 및 교육, 통계 및 기록물 관리
6. 제1호 각 목의 사건과 관련된 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④ 반독점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다음 각 목의 중대범죄등 사건 및 중대범죄수사청장이 명하는 사건에 관한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사무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4조 및 제125조의 범죄사건
나. 법 제2조제2호나목의 범죄사건 중 공정거래·기업범죄사건
다. 가목 및 나목의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사건
2. 제1호 각 목의 사건에 대한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사무의 보고 및 관련 정보의 보고에 관한 사항
3. 제1호 각 목의 사건과 관련된 진정·내사·탄원 등의 접수·처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 각 목의 사건과 관련된 범죄 현상 및 정보의 수집·분석·관리·연구, 정책·수사지침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제1호 각 목의 사건과 관련된 수사기법 개발·지원 및 교육, 통계

및 기록물 관리

6. 제1호 각 목의 사건과 관련된 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⑤ 범죄수익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다음 각 목의 중대범죄등 사건 등에 관한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사무
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범죄사건

나. 법 제2조제1호바목의 범죄사건

다. 법 제2조제2호나목의 범죄사건 중 재산국외도피범죄사건 및 범
죄수익은닉범죄사건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사건

마. 범죄수익의 추적 및 환수 지원 사무

2. 제1호 각 목의 사건 등에 대한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사무의 보고 및
관련 정보의 보고에 관한 사항

3. 제1호 각 목의 사건 등과 관련된 진정·내사·탄원 등의 접수·처
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 각 목의 사건 등과 관련된 범죄 현상 및 정보의 수집·분석·
관리·연구, 정책·수사지침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제1호 각 목의 사건 등과 관련된 수사기법 개발·지원 및 교육, 통
계 및 기록물 관리

6. 제1호 각 목의 사건 등과 관련된 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제8조(반부패수사국) ① 반부패수사국에 반부패수사과·마약수사과·공

공사회안전수사과 및 자금추적·회계분석과를 두며, 반부패수사과장은 3급 수사관으로, 마약수사과장·공공사회안전수사과장 및 자금추적·회계분석과장은 4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② 반부패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다음 각 목의 중대범죄등 사건 및 중대범죄수사청장이 명하는 사건에 관한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사무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 가. 「형법」 제122조, 제124조부터 제127조까지, 제129조부터 133조까지, 제141조, 제225조, 제227조, 제227조의2 및 제229조(제225조, 제227조 및 제227조의2의 행사죄에 한정한다)의 범죄사건
- 나. 「변호사법」 제111조의 범죄사건
- 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제5조의 범죄사건
- 라. 「형법」 제123조의2의 범죄사건
- 마. 공소청 소속 공무원, 경찰공무원(다른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파견공무원을 포함한다), 법원 소속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사건
- 바. 법 제2조제2호나목의 범죄사건 중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등 부패범죄사건, 공소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원 소속 공무원 및 경찰 등 공무원의 범죄사건

-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사건
2. 제1호 각 목의 사건에 대한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사무의 보고 및 관련 정보의 보고에 관한 사항
3. 제1호 각 목의 사건과 관련된 진정·내사·탄원 등의 접수·처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 각 목의 사건과 관련된 범죄 현상 및 정보의 수집·분석·관리·연구, 정책·수사지침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제1호 각 목의 사건과 관련된 수사기법 개발·지원 및 교육, 통계 및 기록물 관리
6. 제1호 각 목의 사건과 관련된 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③ 마약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다음 각 목의 중대범죄등 사건 및 중대범죄수사청장이 명하는 사건에 관한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사무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사건
 -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범죄사건
 - 다. 법 제2조제2호나목의 범죄사건 중 마약류 범죄사건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사건
2. 제1호 각 목의 사건에 대한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사무의 보고 및 관련 정보의 보고에 관한 사항
3. 제1호 각 목의 사건과 관련된 진정·내사·탄원 등의 접수·처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 각 목의 사건과 관련된 범죄 현상 및 정보의 수집·분석·관리·연구, 정책·수사지침·단속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제1호 각 목의 사건과 관련된 수사기법 개발·지원 및 교육, 통계 및 기록물 관리
6. 제1호 각 목의 사건과 관련된 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④ 공공사회안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다음 각 목의 중대범죄등 사건 및 중대범죄수사청장이 명하는 사건에 관한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사무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가. 「형법」 제2편제1장의 죄 및 제2장의 죄, 제128조의 범죄사건
나. 「정치자금법」 제45조의 범죄사건
다. 「국가정보원법」 제21조 및 제22조의 범죄사건
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범죄사건
마.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및 「군사기밀 보호법」에 각각 규정된 범죄사건
바.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제8항에 따라 각급 공소청의 장 또는 지청의 장이 보완수사요구를 한 범죄사건
사.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제9항에 따라 각급 공소청의 장이 재수사요구를 한 범죄사건
아. 법 제2조제2호나목의 범죄사건 중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등

- 부패범죄사건, 공공안전 관련 범죄사건, 정치자금 관련 범죄사건, 방위사업·군사기밀범죄사건 및 국회에서의 위증 관련 범죄사건
- 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사건
2. 제1호 각 목의 사건에 대한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사무의 보고 및 관련 정보의 보고에 관한 사항
 3. 제1호 각 목의 사건과 관련된 진정·내사·탄원 등의 접수·처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 각 목의 사건과 관련된 범죄 현상 및 정보의 수집·분석·관리·연구, 정책·수사지침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제1호 각 목의 사건과 관련된 수사기법 개발·지원 및 교육, 통계 및 기록물 관리
 6. 제1호 각 목의 사건과 관련된 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 ⑤ 자금추적·회계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대범죄수사청장이 명하는 사건의 자금추적·회계분석 지원 및 그 사무에 관한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사무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무에 관한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사무의 보고 및 관련 정보의 보고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무와 관련된 진정·내사·탄원 등의 접수·처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의 사무와 관련된 정보의 수집·분석·관리·연구, 정책·수사지침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제1호의 사무와 관련된 기법 개발·지원 및 교육, 통계 및 기록물 관리

6. 제1호의 사무와 관련된 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7. 제1호에 규정된 사무에 관한 수사장비의 확보·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과학수사국) ① 과학수사국에 사이버기술수사과·디지털수사과 및 AI가상자산분석과를 두며, 사이버기술수사과장은 3급 수사관으로, 디지털수사과장 및 AI가상자산분석과장은 4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② 사이버기술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다음 각 목의 중대범죄등 사건 및 중대범죄수사청장이 명하는 사건에 관한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사무의 지휘·감독 및 수사지원에 관한 사항

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 및 제38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4까지의 범죄사건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제11호부터 제14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 「형법」 제356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범죄 중 기술유출 등 국가핵심기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2호의 국가핵심기반을 말한다) 공격에 해당하는 사이버범죄사건
다. 법 제2조제2호나목의 범죄사건 중 사이버·산업기술범죄사건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사건
2. 제1호 각 목의 사건에 대한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사무의 보고 및 관련 정보의 보고에 관한 사항
3. 제1호 각 목의 사건과 관련된 진정·내사·탄원 등의 접수·처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 각 목의 사건과 관련된 범죄 현상 및 정보의 수집·분석·관리·연구, 정책·수사지침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제1호 각 목의 사건과 관련된 수사기법 개발·지원 및 교육, 통계 및 기록물 관리
6. 제1호 각 목의 사건과 관련된 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7. 제1호 각 목의 사건에 관한 수사지원을 위한 국제수사공조 등의 이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제1호 각 목의 사건에 관한 수사장비의 확보·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과학수사업무의 기획 및 종합계획의 수립과 과학수사 관련 행정에 관한 사항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지도·교육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③ 디지털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자적 증거의 분석에 관한 사항
2. 전자적 증거의 분석기법에 관한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3. 전자적 과학수사기법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4. 디지털수사 유관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디지털수사 장비의 확보·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지도·교육에 관한 사항

④ AI가상자산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AI 활용 범죄 및 가상자산 추적·분석에 관한 사항
2. AI 활용 범죄 및 수사기법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3. 가상자산 추적·분석기법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4. AI가상자산분석과 관련된 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5. AI가상자산분석 장비의 확보·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지도·교육에 관한 사항

제3장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제1절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

제10조(담당관) 청장 밑에 수사심의담당관·인권보호담당관·기획공보담당관 및 수사정보담당관을 두며, 각 담당관은 4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제11조(수사심의담당관) 수사심의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1. 수사심의에 관한 사항
2. 구체적 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지휘·감독에 관한 적법성·정당성에 대한 이의제기의 심의에 관한 사항
3.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4. 소송사무에 관한 사항

제12조(인권보호담당관) 인권보호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1. 인권침해 예방·감독에 관한 사항
2. 소속 공무원 인권침해 사건 처리에 관한 사항
3.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
4. 양성평등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사항
5. 소속 공무원의 양성평등 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에 관한 사항
6. 소속 공무원의 비위에 관한 조사
7. 소속 공무원의 비위에 관한 정보수집·관리 및 진정 그 밖에 내사 사건의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제13조(기획공보담당관) 기획공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1. 운영계획 및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2. 법령에 관한 사항
3. 사무감사에 관한 사항

4. 청 업무의 대외 공표에 관한 사항
5. 청의 홍보기획에 관한 사항
6. 보도자료 관리·분석, 오보·왜곡보도에 대한 대응
7. 언론취재의 지원 및 협조

제14조(수사정보담당관) 수사정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1. 법 제4조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의 직무에 속하는 범죄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의 수집·분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청장이 지정하는 중대범죄등 관련 정보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사항

제15조(사무국) ① 사무국에 총무과·사건과·증거기록과·수사지원과 및 과학수사지원과를 두며, 각 과장은 4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②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기록물의 정리·분류·접수·발송·보존·이관·폐기·활용과 기록관 및 기록관리시스템의 운영·관리
3. 소속 공무원의 임용·교육훈련 그 밖에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4. 소속 공무원의 복무, 연금, 급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무
5. 예산운영·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물품의 관리 및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
7. 차량의 유지·운영에 관한 사항

8. 민원, 국민신문고 및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및 관리
9. 전산장비·자료 및 통신기기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③ 사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건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영장에 관한 사항
3. 사건사무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
4. 진정·탄원 그 밖에 내사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통계에 관한 사항
6.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의 통보사건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④ 증거기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압수금품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압수금품의 보관·관리에 관한 사항
3. 사건기록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⑤ 수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장이 명하는 중대범죄등 사건의 수사지원
2. 소재수사, 호송 등 수사지원
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범죄사건의 수사지원

⑥ 과학수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및 정보통신매체와 관련된 증거자료에 대한 압수·수색 및 분석에 관한 사항

2. 과학수사장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6조(경제범죄수사국) ① 경제범죄수사국에 중대경제범죄수사1과·중대경제범죄수사2과·조세범죄수사과·국제경제범죄수사과 및 범죄수익수사과를 두며, 각 과장은 4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② 중대경제범죄수사1과장과 중대경제범죄수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며, 각 과장 간의 사무분장은 청장이 정한다. 다만, 제6호는 중대경제범죄수사1과장에 한정한다.

1. 다음 각 목의 중대범죄등 사건과 청장이 지정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가. 제7조제2항제1호가목 및 같은 호 다목의 범죄사건

나. 법 제2조제2호나목의 범죄사건 중 경제범죄사건

다. 가목 및 나목의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사건

2.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범죄수법의 조사·연구 및 공조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5.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③ 조세범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다음 각 목의 중대범죄등 사건과 청장이 지정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가. 제7조제2항제1호나목의 범죄사건

나. 법 제2조제2호나목의 범죄사건 중 조세범죄사건

다. 가목 및 나목의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사건

2.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범죄수법의 조사·연구 및 공조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5.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④ 국제경제범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다음 각 목의 중대범죄등 사건과 청장이 지정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가. 제7조제2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범죄사건 중 외국인 또는 외국인과 관련된 범죄사건

나. 법 제2조제2호나목의 범죄사건 중 외국인 또는 외국인과 관련된 범죄사건

다. 가목 및 나목의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사건

2.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범죄수법의 조사·연구 및 공조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5.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⑤ 범죄수익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7조제5항제1호의 범죄사건 및 사무와 청장이 지정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범죄수법의 조사·연구 및 공조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5.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제17조(금융범죄수사국) ① 금융범죄수사국에 금융범죄수사1과·금융범죄수사2과·금융범죄합동수사과 및 가상자산합동수사과를 두며, 각 과장은 4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② 금융범죄수사1과장, 금융범죄수사2과장 및 금융범죄합동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며, 각 과장 간의 사무분장은 청장이 정한다. 다만, 제6호는 금융범죄수사1과장에 한정한다.

1. 다음 각 목의 중대범죄등 사건과 청장이 지정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가. 제7조제3항제1호가목의 범죄사건
 - 나. 법 제2조제2호나목의 범죄사건 중 금융범죄사건
 - 다. 가목 및 나목의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사건
2.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범죄수법의 조사·연구 및 공조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5.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③ 가상자산합동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다음 각 목의 중대범죄등 사건과 청장이 지정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가. 제7조제3항제1호나목의 범죄사건

나. 법 제2조제2호나목의 범죄사건 중 가상자산범죄사건

다. 가목 및 나목의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사건

2.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범죄수법의 조사·연구 및 공조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5.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제18조(반독점수사국) ① 반독점수사국에 반독점수사1과·반독점수사2과·반독점수사3과 및 반독점수사4과를 두며, 각 과장은 4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② 반독점수사1과장, 반독점수사2과장, 반독점수사3과장 및 반독점수사4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며, 각 과장 간의 사무분장은 청장이 정한다. 다만, 제6호는 반독점수사1과장에 한정한다.

1. 제7조제4항제1호의 범죄사건과 청장이 지정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범죄수법의 조사·연구 및 공조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5.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19조(반부패수사국) ① 반부패수사국에 반부패수사1과·반부패수사2과·반부패수사3과·공공안전수사과 및 사회약자범죄특별수사과를 두며, 각 과장은 4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② 반부패수사1과장, 반부패수사2과장, 반부패수사3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며, 각 과장 간의 사무분장은 청장이 정한다. 다만, 제6호는 반부패수사1과장에 한정한다.

1. 제8조제2항제1호의 범죄사건과 청장이 지정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범죄수법의 조사·연구 및 공조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5.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③ 공공안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다음 각 목의 중대범죄등 사건과 청장이 지정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가. 제8조제4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범죄사건

나. 법 제2조제2호나목의 범죄사건 중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등 부패범죄사건, 공공안전 관련 범죄사건, 정치자금 관련 범죄사건 및 국회에서의 위증 관련 범죄사건

다. 가목 및 나목의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사건

2.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범죄수법의 조사·연구 및 공조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5.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④ 사회약자범죄특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다음 각 목의 중대범죄등 사건과 청장이 지정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가. 제8조제4항제1호바목 및 사목의 범죄사건

나. 가목의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사건

2.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범죄수법의 조사·연구 및 공조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5.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제20조(마약수사국) ① 마약수사국에 마약수사1과·마약수사2과·마약수사3과 및 마약수사4과를 두며, 각 과장은 4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② 마약수사1과장·마약수사2과장·마약수사3과장 및 마약수사4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며, 각 과장 간의 사무분담은 청장이 정한다. 다만, 제6호는 마약수사1과장에 한정한다.

1. 제8조제3항제1호의 범죄사건과 청장이 지정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범죄수법의 조사·연구 및 공조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5.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21조(첨단수사국) ① 첨단수사국에 방위사업·산업기술수사과·사이버정보수사과 및 보이스피싱범죄합동수사과를 두며, 각 과장은 4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② 방위사업·산업기술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다음 각 목의 중대범죄등 사건과 청장이 지정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가. 제8조제4항제1호마목 및 제9조제2항제1호가목의 범죄사건

나. 법 제2조제2호나목의 범죄사건 중 방위사업·군사기밀범죄사건
및 산업기술범죄사건

다. 가목 및 나목의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사건

2.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범죄수법의 조사·연구 및 공조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5.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③ 사이버정보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다음 각 목의 중대범죄등 사건과 청장이 지정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가. 제9조제2항제1호나목의 범죄사건

나. 법 제2조제2호나목의 범죄사건 중 사이버범죄사건

다. 가목 및 나목의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사건

2.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범죄수법의 조사·연구 및 공조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5.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④ 보이스피싱범죄합동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다음 각 목의 중대범죄등 사건과 청장이 지정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가. 제7조제2항제1호라목의 범죄사건

나. 법 제2조제2호나목의 범죄사건 중 보이스피싱범죄사건

다. 가목 및 나목의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사건

2.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범죄수법의 조사·연구 및 공조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5.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제2절 수원지방중대범죄수사청

제22조(담당관) ① 청장 밑에 수사심의담당관·인권보호담당관·기획공보담당관 및 수사정보담당관을 두며, 각 담당관은 4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② 수사심의담당관은 제11조 각 호의 사항, 인권보호담당관은 제12조 각 호의 사항, 기획공보담당관은 제13조 각 호의 사항, 수사정보담당관은 제14조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각각 청장을 보좌한다.

제23조(경제범죄수사국) ① 경제범죄수사국에 중대경제범죄수사과·금융범죄수사과·반독점수사과 및 범죄수익수사과를 두며, 각 과장은 4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② 중대경제범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7조제2항제1호의 범죄사건과 청장이 지정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범죄수법의 조사·연구 및 공조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5.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③ 금융범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7조제3항제1호의 범죄사건과 청장이 지정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범죄수법의 조사·연구 및 공조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5.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④ 반독점수사과장은 제18조제2항 각 호의 사항과 청장이 지정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⑤ 범죄수익수사과장은 제16조제5항 각 호의 사항과 청장이 지정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24조(반부패수사국) ① 반부패수사국에 반부패수사1과·반부패수사2과·마약합동수사과 및 방위사업·산업기술수사과를 두며, 각 과장은 4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② 반부패수사1과장 및 반부패수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며, 각 과장 간의 사무분장은 청장이 정한다. 다만, 반부패수사1과장은 다음 제1호나목의 범죄사건을 제외하며, 다음 제6호는 반부패수사1과장에 한정한다.

1. 다음 각 목의 중대범죄등 사건과 청장이 지정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가. 제8조제2항제1호, 같은 조 제4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제9조제2항제1호의 범죄사건

나. 제8조제4항제1호바목 및 사목의 범죄사건

다. 법 제2조제2호나목의 범죄사건 중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등 부패범죄사건, 공소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원 소속 공무원 및 경찰 등 공무원의 범죄사건, 공공안전 관련 범죄사건, 정치자금 관련 범죄사건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사건

2.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범죄수법의 조사·연구 및 공조에 관한 사

항

3.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5.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③ 마약합동수사과장은 제20조제2항 각 호의 사항과 청장이 지정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④ 방위사업·산업기술수사과장은 다음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제8조제4항제1호마목의 범죄사건과 청장이 지정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사건
3. 제1호 및 제2호의 사건과 관련된 범죄수법의 조사·연구 및 공조에 관한 사항
4. 제1호 및 제2호의 사건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관리에 관한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6. 제1호 및 제2호의 사건과 관련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제25조(사무국) ① 사무국에 총무과·사건과·수사지원과 및 과학수사지원과를 두며, 각 과장은 4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② 총무과장은 제1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③ 사건과장은 제15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

④ 수사지원과장은 제15조제5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⑤ 과학수사지원과장은 제15조제6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3절 대전지방중대범죄수사청

제26조(담당관) ① 청장 밑에 수사심의담당관·인권보호담당관·기획공보담당관 및 수사정보담당관을 두며, 각 담당관은 4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② 수사심의담당관은 제11조 각 호의 사항, 인권보호담당관은 제12조 각 호의 사항, 기획공보담당관은 제13조 각 호의 사항, 수사정보담당관은 제14조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각각 청장을 보좌한다.

제27조(경제범죄수사국) ① 경제범죄수사국에 중대경제범죄수사과·금융범죄수사과·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과 및 범죄수익수사과를 두며, 각 과장은 4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② 중대경제범죄수사과장은 제18조제2항 및 제23조제2항(제7조제2항 제1호나목의 범죄사건을 제외한다) 각 호의 사항과 청장이 지정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③ 금융범죄수사과장은 제23조제3항 각 호의 사항과 청장이 지정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④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과장은 제16조제3항 각 호의 사항과 청장이

지정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⑤ 범죄수익수사과장은 제16조제5항 각 호의 사항과 청장이 지정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28조(반부패수사국) ① 반부패수사국에 반부패수사1과·반부패수사2과·마약수사과 및 산업기술수사과를 두며, 각 과장은 4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② 반부패수사1과장 및 반부패수사2과장은 제24조제2항 각 호의 사항과 청장이 지정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며, 각 과장 간의 사무분장은 청장이 정한다.

③ 마약수사과장은 제20조제2항 각 호의 사항과 청장이 지정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④ 산업기술수사과장은 제24조제4항 각 호의 사항과 청장이 지정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29조(사무국) ① 사무국에 총무과·사건과·수사지원과 및 과학수사지원과를 두며, 각 과장은 4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② 총무과장은 제1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③ 사건과장은 제15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④ 수사지원과장은 제15조제5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⑤ 과학수사지원과장은 제15조제6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4절 부산지방중대범죄수사청

제30조(담당관) ① 청장 밑에 수사심의담당관·인권보호담당관·기획공보담당관 및 수사정보담당관을 두며, 각 담당관은 4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② 수사심의담당관은 제11조 각 호의 사항, 인권보호담당관은 제12조 각 호의 사항, 기획공보담당관은 제13조 각 호의 사항, 수사정보담당관은 제14조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각각 청장을 보좌한다.

제31조(경제범죄수사국) ① 경제범죄수사국에 중대경제범죄수사과·국제경제범죄수사과·금융범죄수사과 및 범죄수익수사과를 두며, 각 과장은 4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② 중대경제범죄수사과장은 제23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사항과 청장이 지정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③ 국제경제범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7조의 범죄사건 중 외국인 또는 외국인과 관련된 범죄사건과 청장이 지정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범죄수법의 조사·연구 및 공조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5.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④ 금융범죄수사과장은 제23조제3항 각 호의 사항과 청장이 지정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⑤ 범죄수익수사과장은 제16조제5항 각 호의 사항과 청장이 지정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32조(반부패수사국) ① 반부패수사국에 반부패수사1과·반부패수사2과·마약수사1과 및 마약수사2과를 두며, 각 과장은 4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② 반부패수사1과장 및 반부패수사2과장은 제24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사항과 청장이 지정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며, 각 과장 간의 사무분장은 청장이 정한다.

③ 마약수사1과장 및 마약수사2과장은 제20조제2항 각 호의 사항과 청장이 지정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며, 각 과장 간의 사무분담은 청장이 정한다.

제33조(사무국) ① 사무국에 총무과·사건과·수사지원과 및 과학수사지원과를 두며, 각 과장은 4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② 총무과장은 제1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③ 사건과장은 제15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④ 수사지원과장은 제15조제5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⑤ 과학수사지원과장은 제15조제6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5절 대구·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

제34조(담당관) ① 각 청장 밑에 수사심의담당관·인권보호담당관·기획공보담당관 및 수사정보담당관을 두며, 각 담당관은 4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② 수사심의담당관은 제11조 각 호의 사항, 인권보호담당관은 제12조 각 호의 사항, 기획공보담당관은 제13조 각 호의 사항, 수사정보담당관은 제14조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각각 청장을 보좌한다.

제35조(경제범죄수사국) ① 경제범죄수사국에 중대경제범죄수사과·금융범죄수사과 및 범죄수익수사과를 두며, 각 과장은 4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② 중대경제범죄수사과장은 제23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사항과 청장이 지정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③ 금융범죄수사과장은 제23조제3항 각 호의 사항과 청장이 지정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④ 범죄수익수사과장은 제16조제5항 각 호의 사항과 청장이 지정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36조(반부패수사국) ① 반부패수사국에 반부패수사1과·반부패수사2과 및 마약수사과를 두며, 각 과장은 4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② 반부패수사1과장 및 반부패수사2과장은 제24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사항과 청장이 지정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며, 각 과장 간의 사무분장은 청장이 정한다.

③ 마약수사과장은 제20조제2항 각 호의 사항과 청장이 지정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37조(사무국) ① 사무국에 총무과·사건과·수사지원과 및 과학수사지원과를 두며, 각 과장은 4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② 총무과장은 제1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③ 사건과장은 제15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④ 수사지원과장은 제15조제5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⑤ 과학수사지원과장은 제15조제6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4장 공무원의 정원

제38조(중대범죄수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중대범죄수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 중대범죄수사청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비상안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제39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대범죄수사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제5장 평가대상 조직

제40조(평가대상 조직)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 및 보임에 관한 특례) ① 법 부칙 제4조 및 「공소청법」 부칙 제7조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관을 임용하여 이 규칙에 따른 2급 또는 3급 수사관의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중대범죄수사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 법 부칙 제4조 및 「공소청법」 부칙 제7조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관을 임용하여 이 영에 따른 2급 또는 3급 수사관의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제15조부터 제25조까지에 따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2급 수사관에 해당하는 현원은 3급 수사관의 직위에, 3급 수사관에 해당하는 현원은 4급 수사관의 직위에 보할 수 있다.

[별표 1]

중대범죄수사청 공무원 정원표(제38조제1항 관련)

총계	396
수사관 계	333
중대범죄수사청장	1
1급	1
2급	8
3급	8
4급	46
5급	64
6급	84
7급	75
8급	46
일반직 계	63
임기제 서기관(비상안전담당관)	1
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5급 수사관	4
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 또는 6급 수사관	6
심리연구사 또는 기록연구사	3
전산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 또는 7급 수사관	6
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2
운전주사보	1
전산서기·방송통신서기 또는 8급 수사관	10

운전서기	3
방호서기	3
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2
운전서기보	4
방호서기보	4
관리운영서기보	11
전문경력관 나군(양성평등 담당)	1
전문경력관 나군(홍보 담당)	1
전문경력관 나군(노무관리 담당)	1

[별표 2]

지방중대범죄수사청 공무원 정원표(제39조 관련)

총 계	2,478
수사관 계	2,234
1급	6
2급	8
3급	22
4급	175
5급	291
6급	504
7급	588
8급	395
9급	245
일반직 계	205
행정사무관	2
보건연구관	1
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 또는 6급 수사관	9
출입국관리주사	1
세무주사	1
관세주사	2
보건연구사 또는 기록연구사	8
전산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 또는 7급 수사관	18

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6
운전주사보	1
출입국관리주사보	2
세무주사보	5
관세주사보	2
전산서기·방송통신서기 또는 8급 수사관	16
공업서기 또는 시설서기	6
운전서기	11
방호서기	12
세무서기	2
관세서기	1
전산서기보·방송통신서기보 또는 9급 수사관	12
공업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	6
운전서기보	32
방호서기보	12
관리운영서기보 또는 9급 수사관	37
경찰공무원 계	39
경정	2
경감	8
경위	11
경사	17
경장	1

[별표 3]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40조 관련)

1.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정원	평가기간
가. 감찰관 인권양성평등담당관	12명 (4급 수사관 2명, 5급 수사관 2명, 6급 수사관 2명, 7급 수사관 3명, 8급 수사관 2명, 전문나 1명)	2029년 6월 30일까지
나. 인사정책기획관	1명 (2급 수사관 1명)	2029년 6월 30일까지
다. 인사정책기획관 수사정책담당관	34명 (3급 수사관 1명, 4급 수사관 10명, 5급 수사관 22명, 8급 수사관 1명)	2029년 6월 30일까지
라. 수사정보관	1명 (2급 수사관 1명)	2029년 6월 30일까지
마. 수사정보관 수사정보1담당관	11명 (3급 수사관 1명, 4급 수사관 1명, 5급 수사관 1명, 6급 수사관 3명, 7급 수사관 3명, 8급 수사관 1명, 9급 1명)	2029년 6월 30일까지
바. 수사정보관 수사정보2담당관	15명 (4급 수사관 2명, 5급 수사관 2명, 6급 수사관 5명, 7급 수사관 5명, 8급	2029년 6월 30일까지

	수사관 1명)	
사. 경제범죄수사국	1명 (2급 수사관 1명)	2029년 6월 30일까지
아. 경제범죄수사국 경제범죄수사과	11명 (3급 수사관 1명, 4급 수사관 1명, 5급 수사관 2명, 6급 수사관 3명, 7급 수사관 2명, 8급 수사관 1명, 9급 1명)	2029년 6월 30일까지
자. 경제범죄수사국 금융범죄수사과	10명 (4급 수사관 2명, 5급 수사관 2명, 6급 수사관 3명, 7급 수사관 2명, 8급 수사관 1명)	2029년 6월 30일까지
차. 경제범죄수사국 반독점수사과	10명 (4급 수사관 2명, 5급 수사관 2명, 6급 수사관 3명, 7급 수사관 2명, 8급 수사관 1명)	2029년 6월 30일까지
카. 경제범죄수사국 범죄수익수사과	8명 (4급 수사관 2명, 5급 수사관 1명, 6급 수사관 2명, 7급 수사관 2명, 8급 수사관 1명)	2029년 6월 30일까지
타. 반부패수사국	1명 (2급 수사관 1명)	2029년 6월 30일까지
파. 반부패수사과	21명 (3급 수사관 1명, 4급 수사관 2명, 5급 수사관 5명, 6급 수사관 6명, 7급	2029년 6월 30일까지

	수사관 4명, 8급 수사관 2명, 9급 1명)	
하. 마약수사과	9명 (4급 수사관 2명, 5급 수사관 2명, 6급 수사관 2명, 7급 수사관 2명, 8급 수사관 1명)	2029년 6월 30일까지
거. 공공사회안전수사과	14명 (4급 수사관 3명, 5급 수사관 2명, 6급 수사관 3명, 7급 수사관 3명, 8급 수사관 1명, 연구사 2명)	2029년 6월 30일까지
너. 자금추적·회계분석과	16명 (4급 수사관 2명, 5급 수사관 1명, 6급 수사관 6명, 7급 수사관 6명, 8급 수사관 1명)	2029년 6월 30일까지
더. 과학수사국	1명 (2급 수사관 1명)	2029년 6월 30일까지
러. 사이버기술수사과	16명 (3급 수사관 1명, 5급 수사관 1명, 6급 수사관 1명, 7급 수사관 2명, 8급 수사관 2명,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8급 4명, 9급 2명)	2029년 6월 30일까지
머. 디지털수사과	29명 (4급 수사관 1명, 5급 수사관 1명, 6급 수사관 7명, 7급 수사관 6명, 8급	2029년 6월 30일까지

	수사관 10명, 5급 1명, 6급 1명, 8급 2명)	
버. AI가상자산분석과	15명 (4급 수사관 1명, 5급 수사관 3명, 6급 수사관 4명, 7급 수사관 3명, 8급 수사관 4명)	2029년 6월 30일까지

2. 중대범죄수사청 소속기관

조직	정원	평가기간
가. 지방중대범죄수사청 6개 수사심의담당관	58명 (4급 수사관 7명, 5급 수사관 11명, 6급 수사관 15명, 7급 수사관 12명, 8급 수사관 7명, 9급 수사관 6명)	2029년 6월 30일까지
나. 지방중대범죄수사청 6개 수사정보담당관	62명 (4급 수사관 7명, 5급 수사관 7명, 6급 수사관 23명, 7급 수사관 19명, 8급 수사관 6명)	2029년 6월 30일까지
다. 지방중대범죄수사청 6개 인권보호담당관	53명 (4급 수사관 7명, 5급 수사관 6명, 6급 수사관 12명, 7급 수사관 14명, 8급 수사관 7명, 9급 수사관 7명)	2029년 6월 30일까지
라. 지방중대범죄수사청 6개 경제범죄수사국	6명 (3급 수사관 6명)	2029년 6월 30일까지

마. 지방중대범죄수사청 6개 경제범죄수사국 23개 과	532명 (4급 수사관 44명, 5급 수사관 77명, 6급 수사관 122명, 7급 수사관 145명, 8급 수사관 86명, 9급 수사관 47명, 6급 1명, 7급 2명, 8급 2명, 9급 6명)	2029년 6월 30일까지
바. 지방중대범죄수사청 6개 반부패수사국	6명 (3급 수사관 6명)	2029년 6월 30일까지
사. 지방중대범죄수사국 6개 반부패수사국 23개 과	629명 (4급 수사관 45명, 5급 수사관 85명, 6급 수사관 146명, 7급 수사관 168명, 8급 수사관 94명, 9급 수사관 56명, 6급 2명, 7급 3명, 8급 1명, 9급 7명, 경정 1명, 경감 4명, 경위 7명, 경사 8명, 해경 경사 1명, 해경 경장 1명)	2029년 6월 30일까지
아. 지방중대범죄수사청 6개 사무국 과학수사지원과	97명 (4급 수사관 7명, 5급 수사관 7명, 6급 수사관 12명, 7급 수사관 31명, 8급 수사관 26명, 9급 수사관 6명, 6급 1명, 7급 1명, 9급 3명, 연구관 1명, 연구사 2명)	2029년 6월 30일까지
자.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 금융수사국	1명 (3급 수사관 1명)	2029년 6월 30일까지
차.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	149명	2029년 6월 30일까지

청 금융수사국 4개 과	(4급 수사관 8명, 5급 수사관 24명, 6급 수사관 27명, 7급 수사관 34명, 8급 수사관 24명, 9급 수사관 9명, 5급 2명, 6급 5명, 7급 7명, 8급 5명, 9급 4명)	
카.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 반독점수사국	1명 (3급 수사관 1명)	2029년 6월 30일까지
타.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 반독점수사국 4개 과	121명 (4급 수사관 8명, 5급 수사관 12명, 6급 수사관 28명, 7급 수사관 32명, 8급 수사관 28명, 9급 수사관 12명, 9급 1명)	2029년 6월 30일까지
파.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 마약수사국	1명 (3급 수사관 1명)	2029년 6월 30일까지
하.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 마약수사국 4개 과	121명 (4급 수사관 8명, 5급 수사관 18명, 6급 수사관 29명, 7급 수사관 33명, 8급 수사관 20명, 9급 수사관 12명, 9급 1명)	2029년 6월 30일까지
거.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 첨단수사국	1명 (3급 수사관 1명)	2029년 6월 30일까지
너.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 첨단수사국 3개 과	116명 (4급 수사관 6명, 5급 수사관 13명, 6급 수사관 19명, 7급 수사관 20명, 8급 수사관 11명, 9급 수사관 10명, 6급 3명, 7급 8명, 8급	2029년 6월 30일까지

	5명,9급 4명, 경정 1명, 경감 4명, 경위 4명, 경사 8명)	
--	--	--